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商標 拒絕查定

〈大法院 第1部 判決〉(1986. 6. 24)

事件番號 : 85 후 86

裁判長 : 최 재 호

關與法官 : 윤 일 영 · 이 명 희 · 황 선 영

1. 審判請求人(上告人) : 펴부실리 실베리오(대표 : 부실리실베리오)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 特許廳長
3. 原 審 決 : 特許廳 1985. 6. 29字, 1984年 抗告審判(絶) 第351號 審決
4. 主 文 :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上告人의 부담으로 한다.
5. 理 由 :

上告理由를 본다.

原審決에 의하면 原審은 本원商標는 英文字로 크고 굵게 “CHAMP”라 표기하여서된 文字商標이고 引用商標는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英文字말에 역시 英文字로 “KUKJ ERUBBER”라 가늘게 표기하여서된 商標인 外觀 및 稱號에 있어서는 표기된 英文字가 다르고 또 英文字의 발음도 각기 다른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本원商標 CHAMP에는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戰士, 선수 권보유자 등의 뜻이있는 영문자 CHAMPION의 俗語임을 알 수 있고 俗語와 雅語는 일반거래 사회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거래 설정임을 감안할 때 비록 本원商標가 引用商標의 요부인 CHAMPION의 俗語임을 영어사전을 찾아봄으로써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文字가 가지는 뜻의 相關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本원商標 CHAMP와 引用商標의 요부인 CHAMPION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同意語로 인식하여 같이 公通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本원商標가 引用商標와 稱號, 外觀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同一性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同種商品이 그 指定商品에 사용할 경우 商品出處의 誤認 混動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다.

생각컨대 商標의 類似與否는 서로 同一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同種의 商品에 사용되는 2개의 商標를 그 外觀, 칭호, 관념을 客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商品間에 誤認 混動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判別하는 方法에 의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이므로 原審이 이러한 觀點에서 本원商標와 引用商標가 비록 稱號와 外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서 同一하다고 하여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7號에 의하여 拒絕查定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正當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審理未盡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8>